

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

(홍성룡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4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월 31일

발 의 자 : 홍성룡, 김화숙, 한기영, 강동길,
김기대, 김정태, 김제리, 김춘례,
박순규, 양민규, 유 용, 이광호,
이동현, 장상기, 황인구 의원
(15명)

1. 제안이유

일본이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나.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독도교육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마.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등 독도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·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)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연간 기본계획(이하 “독도교육 강화 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
2. 재원조달 방안
3. 유관기관과의 협력
4. 프로그램 개발
5.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실태조사)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5조(사업추진)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
2.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
3. 독도 관련 토론회,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
4.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
5. 학생 체험활동 지원 및 교원 연수사업
6.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6조(독도교육주간)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, 서울특별시,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